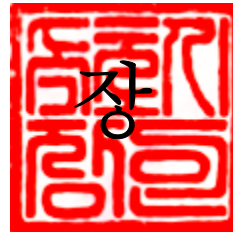


자동차검사과태료 관련 우편물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63조의2(정기검사기간이 지난 자동차에 대한 검사 명령)에 의거 자동차검사명령서와 자동차관리법 제43조 규정에 의한 자동차정기검사 지연(미필)자동차 소유자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84조 규정에 의거 사전처분통지서, 과태료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부재, 주소불명, 이사 등의 사유로 인한 우편물 송달불능으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월 09일

속 초 시



아 래

1. 대상자 : 장규숙 외 91명
2. 공고기간 : 2013. 01.10~2013.01.25
3. 서류의 명칭 : 자동차정기검사 명령서, 사전처분서 등 과태료부과고지서
반송분
4. 서류의 내용 및 반송사유 : 붙임 내역서 참조
5. 의견진술 등

자동차정기검사 미검자는 검사를 받으시기 바라며 본 사항에 대한 납부 의무자는 속초시청 교통행정과 차량등록 부서에서 납부고지서를 발부 받아 납부고지서에 의한 기한내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내에 납부치 않을 시에는 지방세법 제28조의(체납처분)의 규정에 의거 귀하의 재산이 압류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6. 문의처 : 속초시 교통행정과 차량등록팀(033-639-2192)